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67
----------	------

제출년월일: 2025년 3월 31일

제 출 자: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세입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 상향 필요

2. 주요내용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 상향(안 제4조제3항)

-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 협의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5. 2. 10. ~ 3. 6.) 결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u>50퍼센트</u> 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80퍼센트</u> ----- -----. 1. ~ 4. (현행과 같음)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의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적립하여, 조례제4조제3항각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한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주무관 윤진주 (02-2282-8632)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장석윤	○ 현행 유지 또는 60%로 상향한도 조정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적립금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교육재정의 변동성, 2024년도 순세계 잉여금 규모, 서울특별시 전입금 정산 결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종료 후의 대응 방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등의 국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미반영 －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 상향이 필요함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장학사	황은영
입안주관부서	예산담당관	통보일	2025. 2. 17.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사항
안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가 목적이므로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5A서울교육004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예산담당관		
	담당자명	윤진주	전화번호	02-2282-863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명	여인진	전화번호	02-399-9546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5년 02월 1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5년 02월 12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2월 12일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윤진주 (02-2282-8632)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목소희, 박지만, 임종수, 정명화, 유현우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제4조 제3항	- 본 조례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원안 동의

【별첨 7】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